朝鮮後期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Ⅰ)

—法定利子率의 變遷과 行錢의 影響을 中心으로—

徐 吉 洙**

<目 次>

I. 序 言
II. 各種 利息制限令
III. 利息制限令에 따른 法定利子率의 分析
IV. 各種 利子形態
V. 貨幣經濟의 發達과 貸借關係 및 利子
VI. 結 言

I. 序 言

본 연구는 韓國貸借利子史(또는 韓國金融前史)의 일환으로 「古代 韓國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經濟史學』, 제 5 호, 1981. 12. 經濟史學會), 「高麗時代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國際大學論文集』, 제 9 호, 1981), 「朝鮮前期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國際大學論文集』, 제10호, 1982)에 이어 朝鮮後期의 貸借關係 및 利子를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韓國의 貸借利子史를 연구하는 데에는 주로 (i) 利息制限令의 分析을 통한 法定利子率의 變遷狀況 파악, (ii) 貸錢層分析, (iii) 借錢層 및 借錢動機 分析, (iv) 債權의 擔保 및 保證에 관한 分析 등 네 가지 문제를 다루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그 첫번째 문제인 法定利子率의 변천에 대하여 다루기로 하며, 貸錢層分析은 이미 「開港後 利子附資本에 관한 史的考察(Ⅰ)」(『國際大學論文集』, 제 7 호, 1979)에서 開港前 利子附資本의 狀況을 파악할 때 分析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먼저 각종 史料에 나타난 利息制限令을 年代順으로 抽出·整理하고 이

* 國際大學 經濟學科, 이 論文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3年 硏究費支援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整理된 내용에 따라 表를 작성하여 제III절에서 分析하고 제IV절에서는 各種 利子率의 形態를 보고 끝으로 제V절에서는 貨幣經濟의 深化가 貸借 및 利子에 미치는 영향을 考察하였다.

II. 各種 利息制限令

利息制限令에 관한 기록은 『英祖實錄』, 『萬機要覽』, 『秋官志』 및 각종 법전에서 抽出한 것으로 年代順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肅宗 9年(1683)

"公·私의 徵債는 3년이 지나고 나면 利息을 받지 못하며 濫徵하는 자는 法律로써 처벌한다."[1]

② 肅宗 10年(1684)

"子母停殖之法은 빚진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監官·別將 따위가 公貨를 捧授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2]

위의 내용을 통하여 조선 후기까지도 子母停殖之法(고려시대에는 子母停息이라 불렀다)이란 제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公貨를 捧授(남에게 맡기는 것 : 國譯 『典錄通考』)한 監官이나 別將 등 官吏들에게도 그 빌려 준 公貨에 대한 利息을 징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肅宗 13年(1687)

"徵債의 利息은 다만 3년간만 받을 수 있다."[3]

1683年의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承傳했던 해가 4년 뒤인 1687년으로 된 것을 보면 4년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 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그 뒤 1701년(肅宗 27년) 반포된 『典錄通考』[4]에도 똑같이 실려 있다.

④ 肅宗 34年(1708)

"백성의 殖錢은 十二를 넘지 못하도록 禁하였다. (十二란 것은 元錢 十에 利息 二를 받는 것)"[5]

---

1) 『受敎輯錄』, 戶典, 徵債(『受敎輯要』, 147面, 朝鮮總督府 中樞院刊).
"公私徵債 三年之外 不得計捧邊利 濫徵者 以法律."

2) 『受敎輯錄』, 『典錄通考』.
"子母停殖之法 只用於受債之人 至如監官纔別將輩之捧授公貨者 則勿用此規."

3) 『新補受敎輯錄』, 戶典, 徵債(『受敎輯要』, 336面. 朝鮮總督府 中樞院刊).

4) 『典錄通考』(1974. 12. 30. 國譯, 『法制資料』, 제67집), 戶典, 徵債.

5) 『萬機要覽』, 財用編 4, 錢貨.
"戊子 禁民殖錢 無得過十二(十二者 母錢十 取子錢二也)."

다음에 볼 ⑪項의 예로 미루어 보아 年利 2割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長利形式을 취하던 당시 貨幣가 통용되면서 錢貨에 대한 利率을 따로 발표하는 것으로 穀物의 長利에 비해 이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⑤ 肅宗 41年(1715)

"비록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3년간의 利息 이외에는 함부로 받을 수 없다. 10냥의 債錢에 대한 1년의 利息은 2냥, 10斗의 穀物에 대한 1년의 利息은 2斗씩으로 하되 3년을 限度로 계산하여 징수한다."[6]

'3년간의 利息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1683년, 1687년에 이어 세번째 강조하고 있으며, 1708년의 承傳에는 錢貨에 대한 利子率을 언급하였으나 여기서는 錢貨나 穀物이나 다같이 모두 年 2割로 私債利子率을 낮추어 통일시키고 있다.

⑥ 肅宗 43年(1717)

"米·布·銀·錢을 막론하고 중앙과 지방의 官衙에서는 모두 還上(환자)의 예에 따라 年 1割(什一)로 生殖하고, 民間에서는 米穀은 5割(什五), 銀·錢·布는 年 2割(什二)로 生殖한다. 만약 違越하는 자가 있으며 杖 100대로 다스린다."[7]

2년 전인 1715년에는 錢이나 穀食을 막론하고 年 2割이던 私債 利子率이 여기서는 錢·銀·布일 경우와 米穀이었을 경우와 利子率에 차이가 나는데 米穀은 前과 같이 長利의 利子率을 적용한 것이다.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公債—年 1割

私債 ┌ 米穀—5割
　　 └ 銀·錢·布—2割

⑦ 肅宗 43年(1717)

"시골의 殖穀之家들이 봄에 貸穀할 때 돈으로 쳐서 주고, 가을이 되면(그 값에 해당하는) 穀食으로 받아내니, 半年 동안에 2倍·5倍의 利息을 앉아서 얻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고발하게 하여 그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그 물품은 公家에 속하게 한다."[8]

---

6) 『新受教輯要』, 『典錢通考』.
"雖累年未捧 三年邊利之外 不得濫徵 十兩債錢一年邊利二兩 十斗穀物一年邊利二斗式 限三年支計徵給."

7) 『新受教輯要』, 『典錄通考』.
"勿論米布銀錢 京外各衙門 一從還上例 什一生殖 民間別米穀用什五 銀錢布則什二生殖 如或違越者 則施以杖一百之律."

8) 『新補受教輯錄』, 『典錄通考』, 『續大典』(1965. 4. 25. 109面, 國譯, 法制處, 『法制資料』, 제19집), 『大典通編』(國譯, 法制處, 『法制資料』, 제 8 집, 232~4面), 『大典會通』.
"鄕中殖穀之家 乘春貸穀 以錢折直 及 秋以穀徵捧 半年內坐獲箠之利 使民發告 嚴治其人 屬公其貨."

이것은 소위 行錢의 폐단을 논할 때 많은 大臣들이 주장하였던 것으로 貨幣가 유통됨에 따라 利子史에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後述).

⑧ 肅宗 44年(1718)

"右議政 李가 啓하기를 '民間의 疾苦는 다 列擧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부유한 백성의 生殖之道는 甲利에 이르러 極에 달했읍니다. 옛부터 財貨를 生殖하는 데는 일정한 法이 있읍니다. 官貨인 경우는 米·布·銀·錢 어느 것이나 什一(1割)로 生殖하고, 民間의 것은 米穀은 什五(5割), 錢과 布는 什二(2割)로 生殖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違越하면 官吏인 경우는 制書有違律로 다스리고, 私家인 경우는 杖 1백의 형을 시행한다면 가난한 백성이 지탱해 보전할 수 있겠읍니다.' 임금이 그것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였다."[9]

이것은 ⑥項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특히 甲利(利率이 年 10割인 貸借)의 금지조항이 특이하다.

⑨ 英祖 3년(1727)

"穀食으로 빌려 준 것을 돈으로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래야만 利息을 추가시키는 病弊를 금지할 수 있다. 각별히 嚴禁할 것이며 만약 다시 이러한 일을 한다면 徒邊律로써 처벌한다."[10]

이것은 ⑦項의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⑩ 英祖 3年(1727)

"모든 徵債는 錢이면 什二(2割), 穀이면 什五(5割)로 하며, 公債는 어느 것이나 什一(1割)로 取利하되 비록 10년이 되더라도 1년의 利息만 징수한다. 사사로이 甲利를 준 경우에는 刑推하여 定配한다."[11]

이것은 ⑦·⑧項과 利子率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甲利에 대한 刑量이 杖

9) 『秋官志』, 第3篇, 考律部, 徵債, 私債條(國譯, 法制處, 『法制資料』, 제77집, 1975. 12). "四十四年 右議政李 所啓 民間疾苦 雖難殫擧 而富民生殖之道 至於甲利極矣 自古貨財之生殖 自有定式 官貨則勿論米布銀錢 什一生殖 民間則米穀什五 錢布什二生殖 如或違越 則官吏論以制書有違 私家施以杖一百之律 貧民庶可支保 上曰 依此施行."

10) 『新補受敎輯錄』, 『典錄通考』.
"以穀給利者 勿捧其錢 然後庶可禁已 加利之患 各別嚴禁 而若復如此 施以徒邊律"
※ 『국역 대전통문』에는 漢字 원문이나 번역에 모두 「以穀給利者勿捧□□」으로 되어 있어 「其錢」 두자가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譯者가 "양곡으로 이식을 주는 것을 징수할 수 없게한다"고 하여 마치 모든 穀物貸與는 無利子인 것처럼 誤譯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다음 문장의 해석도 「然後庶可禁已加利之患 各別嚴禁」을 「然後庶可禁已加利之患各別嚴禁」이라고 새겨 "그런 뒤에라야만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식을 추가하는 병폐를 각별히 엄금한다"고 번역하여 말의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렸다. 마땅히 "그런 뒤에야만 利息을 추가하는 病弊를 금지할 수 있다. 각별히 엄금할 것이며…"로 새겨야 할 것이다.

11) 『新補受敎輯錄』, 『典錄通考』,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100에서 定配로 더 嚴해진 것이 특색이다. 또한 지금까지 取利의 年限制限이나 「一本一利」「子母停息之法」은 대개 元本과 同額이 될 때까지는 取息이 계속 가능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아무리 여러 해가 지나더라도 1년의 利子만 받도록 함으로 해서 사실상 한번만 利子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無利子가 되는 것으로 徵利史上 커다란 變化라고 할 수 있겠다.

⑪ 英祖 3년(1727)

"守令·邊將 가운데 甲利로써 出給하여 取利한 者는 체포·심문한 뒤 각별히 嚴重하게 다스린다 (大明律을 따라 官吏가 자기관할 안에서 돈놀이를 한 경우에는 杖 80에 처하고, 利息을 自己 개인의 소유로 한 경우에는 枉法贓으로 그 贓物을 계산하며, 重한 경우에는 차차 等級을 加重하여 80貫이면 絞刑에 처한다.)"[12]

이것은 ⑧·⑩項이 民間의 甲利에 대한 制限法令인데 반하여 官吏들의 甲利에 대한 制限法令이라고 할 수 있다.

⑫ 英祖 4년(1728)

"開城留守 趙遠命을 入待하라고 命했다.…遠命이 아뢰기를 '지금 聖上께서 生民을 軫念하시어 公債의 利息에서 什二之法을 除去하셨사오나 松都의 형편이 부득이하므로 民情이 모두 什二法을 원합니다'하니 上이 이르기를 '朝家가 이미 什一로 定했거늘 松都만 유독 什二를 행한다면 朝令이 誠信치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13]

이것은 開城만 什二로 取息하고 있던 公債利子率을 什一로 통일한 내용이다.

⑬『續大典』(英祖 22년, 1746)

"私債를 진 者가 死亡하면 利子를 收捧하여서는 안된다."[14]

이는 本人이 죽고나면 元本만 갚고 利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保證制度에서 死後의 徵債에 대해서는 詳論하기로 한다.

⑭『續大典』(英祖 22년, 1746)

"凡徵債 錢則什二 穀什五 公債俱以什一取利 雖十年只徵一年利 而私與甲利者 刑推定配."

12)『新補受敎輯錄』,『典錄通考』.
"守令邊將中 以甲利出給取利者 拿問後 各別重究(依大明律 官吏於所部內 擧放錢債杖八十 取利入己 以枉法計贓重者 次次加等 八十貫絞)."

13)『英祖實錄』, 卷 19, 英祖 4년 8월, 甲午.
"命開城留守趙遠命入待 上曰… 遠命曰 即今聖上 軫念生民 公債殖利 去什二之法 而松都形勢 有不可已者 故民情皆願行什二矣 上曰 朝家旣定以什一 而松都獨行什二 則朝令不誠信矣."

14)『續大典』(法制處, 國譯本, 111面), 戶典, 徵債條(承傳年月이 확실치 않아 續大典 반포해로 함).

"모든 徵債는 公私債를 不問하고 利息이 什二(2割)를 초과하면 杖 80과 徒刑 2년에 처한다."[15]

이것은 公債는 「什一」에서 「什二」로 올리고 私債에서는 "長利形式인 穀食에서는 「什五」로 한다"는 조항이 폐지되고 모든 利息을 年 2割로 통일한 것으로 이 利子率은 그 뒤 『大典通編』, 『大典會通』에도 계속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續大典』 이후 公定利子率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⑮ 『續大典』(英祖 22년, 1746)

"倭人處에서 負債하거나 倭物을 窃取한 경우에는 모두 舘前에서 斬刑에 처한다."[16]

여기서는 利子率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貸借關係 자체를 禁斷하는 것이므로 한 項目을 설치하였다.

⑯ 英祖 25년(1749)

"上이 偏堂에서 大臣을 引見하였다. 右議政 金若魯가 京外衙門의 給債를 禁할 것과 私債의 取殖은 什二(2割) 이외에는 加數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17]

내용상으로는 이때 이미 公債가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公債는 그 후로도 1900년에 들어서까지도 계속되었다(개항 후의 公債, 後述). 私債의 「什二法」은 『續大典』의 利息制限, 즉 ⑭項 가운데 私債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III. 利息制限令에 따른 法定利子率의 分析

앞 절에서 열거한 法定利子率을 〈表 1〉로 작성하고 公債와 私債로 나누어 朝鮮後期의 法定利子率에 대한 推移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公債의 法定利子率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朝鮮前期의 公債에 대한 法定利子率은 年 2割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들어 와서는 적어도 利子制限令上의 利子率은 前期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英祖 22년에 利子率이 2割로 오른 것은 公私債의 利子率을 差別하지 않고 통합하면서 생긴 것이었으나 3년뒤인 영조 25년(1749)

15) 上同.
16) 上揭書, 刑典, 禁制(國譯本, 287面).
17) 『英祖實錄』, 卷 70, 英祖 25년 9월 己未.
"上 引見大臣偏堂 右議政金若魯 請申 京外衙門給債之禁 私債取殖什二外 無得加數 從之."

公債 자체를 嚴禁한다는 承傳이 있었다.

영조 25년 당시 京外衙門의 給債(公債)를 금한다고 하였으나 公債가 根絶될 수는

〈表 1〉 朝鮮後期의 利息制限令

정리번호	年 代	王 年	公 債	私 債	額數 및 年月의 制限	出 典
1	1683	肅宗 9년			取利는 3年限	①③
2	1684	肅宗 10년			子母停息 負債人에 限定	①③
3	1687	肅宗 13년			取利는 3年限	②③
4	1708	肅宗 34년		(錢) 年 2割		萬機要覽
5	1715	肅宗 41년		(錢) 年 2割	取利는 3年限	②③
				(穀) 年 2割		
6	1717	肅宗 43년	年 1割	(錢布) 年 2割		②③
				(穀) 年 5割		
7	1717	肅宗 43년		春貸穀 以錢折置秋以穀徵 금지		②③④⑤
8	1718	肅宗 44년		甲利금지		秋官志
			年 1割	(錢布) 年 2割		
				(穀) 年 5割		
9	1727	英祖 3년		穀給捧錢 금지		②③
10	1727	英祖 3년		(錢) 年 2割	10년 지나도 1년 利息만 징수	②③④⑤⑥
				(穀) 年 5割		
				甲利 금지		
11	1727	英祖 3년		官吏의 甲利금지		②③
12	1728	英祖 4년	年 1割			英祖實錄
13	1746	英祖 22년			負債人死後 利子정지	④
14	1746	英祖 22년	年 2割	年 2割		④
15	1746	英祖 22년		倭人處 負債금지		④
16	1749	英祖 25년	公債금지	年 2割		英祖實錄

註) 1. 13, 14, 15의 各項은 『續大典』에 실린 것인데 반포한 年度가 명시되지 않아 『續大典』의 發行年度로 하였음.

2. 典據欄의 번호는 다음의 法典을 가리킨다.

① 『受敎輯錄』 ② 『新補受敎輯錄』 ③ 『典錄通考』

④ 『續大典』 ⑤ 『大典通編』 ⑥ 『大典會通』

〈表 2〉 朝鮮朝 公債의 利子率

年 紀	前 期		後 期					
	1432	1526	1717	1718	1727	1728	1746	1749
王 年	世宗 14년	中宗 21년	肅宗 43년	肅宗 44년	英祖 3년	英祖 4년	英祖 22년	英祖 25년
利子率	月 2分	年 2割	年 1割	年 1割	年 1割	年 1割	年 2割	公債嚴禁

없었다. 이는 당시 國家財政의 상당한 부분을 公債에 의해서 메꾸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가 京外衙門의 公債를 금했다고 하나 다른 公債들이 많았던 것을 보여 주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羅里舖殖錢

羅里舖는 숙종 46년(1720) 賑恤廳에서 公州·燕枝의 접경지의 江이 임한 곳에 설치하여 船隻을 많이 두고 留販하여 聚穀하게 한 倉이다. 초기에는 全羅監營의 돈 5,600兩으로 시작 還穀과 같이 什一耗法으로 取耗하였으나 正祖 7년(1783)에 나온 追節目에는 庫舍를 重建하기 위해 什二取殖까지 하고 있다.[18]

(ii) 補土物力錢

正祖 8년(1784) 備邊司에서 都城의 來脈(北域의 普賢峰 기슭에서 北岳의 曲城까지의 主脈)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염출하기 위하여 補土物力錢을 따로 마련하여 取息한 것으로 一分邊利를 定式으로 하였다.[19]

(iii) 宗簿寺의 息利

宗簿寺는 吏曹에 속하는 衙門으로 역대 王의 系譜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璿源諸派를 감독하는 곳인데 매월 한량에 一分씩의 利息을 받는 殖利를 하였다.[20]

(iv) 關西監營의 息利

영조 47년의 기록을 보면 關西平安監營이 감영의 경비충당을 위해 30여만석을 息利하고 있었다.[21]

(v) 開城府의 息利

순조 21년(1821) 開城留守 吳輪源이 올린 疏에 따르면 開城府에서 지출해야 할 여러가지 需用을 담당한 六庫가 모두 殖債에 의해 유지되었는데 利率은 2割씩 받다가 영조 4년(1728) 전국 公債를 1割로 일원화할 때 下向調整되었다.[22]

公債의 利子率은 利息制限令, 즉 국가자체에서 정하여 발표한 대로라면 高利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利息制限令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영조 34년(1758) 關西의 監營, 兵曹 등에서 公銀 40,000兩을 빌려 燕京에 가 帽子를 무역하고 이자 18,000兩을 納入한 것을 보면 利率이 4割 5分이 되며[23], 書廳

18) 『羅里舖事實』(奎章閣所藏本), 追節目, 乾隆 戊寅條, 徐吉洙, 「開港後 利子附資本에 관한 史的 考察(Ⅰ)」, 229~30面 參照.
19) 上揭論文, 230面 및 『備邊司謄錄』 第167册, 正祖 8년 11월 17일條 參照.
20) 上揭論文, 230~1面과 宗簿寺 節目(奎章閣所藏本) 참조.
21) 上揭論文, 232面 참조.
22) 上揭論文, 233面 참조.
23) 上揭論文, 227~8面.

에서 補堰費로 息利한 것을 보면 5割이라는 高率도 있었다.[24]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息利活動이 官吏들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

朝鮮後期의 公債에 대한 公定利子率은 대체로 1割에서 2割이라 할 수 있겠다.

2. 私債의 法定利子率

朝鮮後期 私債에 대한 法定利子率의 推移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 肅宗 36년까지…朝鮮 前期와 같이 長利형식(年5割)이었다.

(ii) 肅宗 36년~42년…肅宗이후 集約的인 貨幣經濟時代에 접어들어 貨幣貸借에 대한 利子率의 지정이 필요해지자 錢貨에 대한 利率을 年 2割로 결정·발표하였다.

(iii) 肅宗 42년~英祖 22년…穀食의 貸借와 銀·錢·布의 貸借에 대한 利子率에 差等을 확실히 하여 穀食은 長利形式으로 年 5割, 銀·錢·布는 年 2割로 하였다.

(iv) 英祖 22년~高宗 光武 10년…穀物이나 錢·布 관계없이 모두 年 2割로 통일함.

3. 取息에 있어 利子總額 및 年限의 制限

朝鮮 前期에는 利子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一本一利」 즉 利子가 元本과 같은 액수가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最高額을 가지고 制限하였다. 그러나 朝鮮 後期에 들어 와서는 額數보다는 주로 年限이라는 期間을 가지고 제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肅宗 9년~英祖 3년…3년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이 넘으면 取息이 정지된다. 때문에 錢·布는 利率이 2割이었으므로 最高 6割까지 받을 수 있으며 穀食의 경우는 年 5割이었으므로 最高 15割까지 殖利할 수 있으나 子母停息法에 걸리기 때문에 10割에서 머물게 된다.

(ii) 英祖 3년~高宗 光武 10年…10년이 지나더라도 1년의 利息밖에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一本一利」나 「子母停息」 같은 量的制限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年 2割의 이자율이라면 2割 이상은 더 받을 수 없고, 年 5割의 이자율이라면 5割 이상 받을 수가 없다.

IV. 各種 利子形態

① 什一, 什一邊(放債)

24) 上揭論文, 235面.
25) 上揭論文, 233面 開城府의 息利와 236面 註 60 참조.

주로 公債에 많이 사용되었던 利子率로 1割(10%)의 利子를 말한다.[25]

② 一分邊利

一分도 10%이지만 月利인지 年利인지 분명하지 않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補土物力錢의 節目 가운데 逐年生殖爲白乎矣 限周年以一分邊利定式爲白齊(해마다 生殖하시되 1년을 期限으로 이자는 一分邊利를 定式으로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公債란 점을 감안하면 年利일 것으로 본다.[26]

③ 每朔每兩一分

月利 1分(푼)으로 1냥=10돈=100푼이므로 1%에 해당한다. 즉, 年 12%로 비교적 싼 이자인데 앞에 나왔던 宗簿寺의 殖利節目에 보인다.[27]

④ 十二, 什二, 什二取息, 什二之法

年 2割(20%)의 利率로 後期의 公債利子率에서 많이 사용되었다.[28]

⑤ 長利, 什五之私債

농촌에서 穀物貸借에 널리쓰인 長利나 什五之私債나 모두 年 5割의 利率로 조선후기에 가장 성행했던 利子形態인 것이다.

⑥ 每朔什一之息

月 1割(10%)이란 高率로 『朝鮮民政資料』에 보면 京主人들이 息利하는 邸債에서 쓰였다.

"邸吏를 당초 설치한 것은 해당 邑의 弊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邸債만 일삼는 것이 되어 버렸읍니다……대개 外邑의 下人으로 上京하여 머무는 자들이 出處의 有無를 생각하지 않고 邸債를 많이 내어 쓰는데, 邸吏 역시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주는 것만 생각하고 收刷할 때 가서는 금액의 多少를 불문하고 每朔什一之息(月 1割)을 받습니다.…"[29]

⑦ 倍徵, 倍息

지방의 수령들이 權力을 이용하여 私債息利를 하거나 賑場을 설치할 때 그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예가 있으며, 특히 京主人들의 貸借에 많이 나온다.

수령들이 권력을 이용 抑配(勒貸)하고 징수할 때에는 官의 위력을 동원하여 勒捧한 것은 숙종 44년의 기록에 보이는데

---

26) 上揭論文, 230面, 補土物力錢 節目 ⑥項 참조.
27) 上揭論文, 231面, 宗簿寺 節目 참조.
28) 上揭論文, 228面(各衙門과 軍門의 息利), 230面(羅里舖), 233面(開城府의 息利) 참조.
29) 『朝鮮民政資料』, 牧民篇, 294面, 居官大要(162).
"邸吏之當初設置 專爲該邑之省弊 而今反以邸債一事…盖外邑下人之上京留連者 不念來頭出處之有無 多出邸債 邸吏亦非不知覇 漢之貧窶而惟意給之 及其收刷之際 無論用錢之多少 一併捧之以每朔什一之息…."

"심지어 수령의 錢穀을 민간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殖利·取息하는 것을 능사로 하며 勒捧·倍息하니 廟堂으로 하여금 事目을 분명히 반포하여 一切 禁斷하소서."[30]

라고 하였으며, 同王 46년에도

"賑場을 설치하는 해에 지방의 수령들이 소위 自給할 자본이라고 하여 京司나 營門의 錢布를 存本取利하는데 대개 實戶에 分俵하여 가을에 倍徵하였다고 한다."[31]

고 하였다. 京邸吏(또는 京主人)의 邸債는 高麗時代에도 倍徵이었으며[32], 朝鮮前期에도 倍息이었다.[33]

⑧ 倍之倍

京邸吏들이 「倍息」으로 빌려 우선 各司에 납부하고 나서 만일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倍息」의 이자만 거두어 들인다면 京邸吏에게는 거두는 데 드는 비용때문에 손해만 보게 된다. 때문에 그 京邸吏는 本邑에 가서 「倍之倍」를 징수하였다.

"서울의 各司가 外方에서 받아 들이는 諸般 身役을 本邑에서 관장하여 徵捧하고 올려 보내는 것인데 만일 上納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각 邑의 京主人에게 責徵하니…(中略)…「倍利」를 내어 그 役價에 충당하고 本邑에 내려가 가난한 백성으로 부터 「倍之倍」를 징수합니다. 다만 本邑에다만 납부한다고 해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항차 「倍之倍」를 징수하니 그 원통함이 말할 수 없읍니다."[34]

---

30) 『肅宗實錄』, 卷 62, 肅宗 44년 12월.

31) 『景宗實錄』, 卷 1, 肅宗 46년 8월.

32) 徐吉洙, 「高麗時代의 貸借關係 및 利子研究」(『國際大學 論文集』, (제 9 호, 1981), 238~9面 참조.

33) 徐吉洙, 「朝鮮前期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研究」(『國際大學 論文集』, (제10호, 1982) 286~7面 및 『受敎輯要』, 各司受敎, 140, 刑曹受敎, 76~7面, 嘉立靑癸丑 33년(明宗 8年)條 "癸丑正月初九日 承傳內"
國家 設置郡縣 各立邸院于京順 所以通朝報 接賓族是去乙 近來凶荒已甚 弊政多端 各司所納貢物及皂隷·羅將·諸員 不能以上納·立役者乙 各司不報該曹直發使令 或稱次知或稱番價 侵徵京邸之吏 唐突叫呼 鞭策毆打 無所不至乙仍于 邸吏等不得一刻 安接邸院 隱避□門 至於不勝其苦 貸出倍息之債 以抑目前[之]急 □□□邑又徵倍息于民門
(국가가 郡縣을 설치하고 서울에 각각 邸院을 세운 것은 朝報를 통하게 하고 여행자를 맞아 대접하도록 한 것인데 근래에 凶荒이 심하여 弊政이 많습니다. 各司는 바칠 貢物이나 皂隷·羅將·諸員으로 上納이나 主役이 불가능한 者를 해당 曹에 알리지도 않고 직접 使令을 보내 혹은 「次知」라고 하고 혹은 「番價」라고 하며 京邸吏를 侵徵하니 당돌하지 않습니까? 鞭策·毆打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 邸吏들은 잠깐이라도 邸院에 있을 수 없어 몸을 피합니다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으며 倍息의 빚을 얻어 눈앞의 급한 것을 막고 □□□ 또 민간에게 倍息을 징수합니다.)

34) 『備邊司謄錄』, 肅宗 30年 1月 8日.
"京各司所納外方諸般身役 例爲行關本邑 徵捧上送 而如有越未上納者 則責徵於 各其京主

⑨ 甲利·甲倍

甲利에 관한 것은『鍾山集抄』別單에 나온 것인데 두 곳에 나온 내용이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 두 내용을 비교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첫째 邸債는 비록 근본을 밝히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그 徵給은 반드시「甲倍」로서 한정하고 만일「甲」이 넘으면 다시 擧論하지 말도록 하며, 民間邸債는 여러 해가 지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관계없이 督捧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즈음 前北伯의 奏言에 따라 이미 해당 道臣에게 行會한「甲利」역시「厚利」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晋州의 사건과 같이 될 것입니다. 각 道에 엄하게 분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소서."[35]

여기서 보면「甲利」란「甲倍」의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甲倍」란 도대체 몇 배를 말하는 것인가?

朝鮮總督府 中樞院에서 간행한『校註大典會通』의「甲利」에 대한 註에는 "債錢의 利子가 一個月에 10割인 것"[36]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달에 10割이 아니라 1년에 10割이었으리라고 본다.

만일「甲利」나「甲倍」가 한달에 10割이라면 위 인용문에서 "徵給은 반드시「甲倍」로서 限定한다"고 하였는데 한달 이자만 받고 한달 이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한달 이자만 받는 月利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일「甲」이 넘으면 擧論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甲」이란「甲倍」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鍾山集抄』別單의 다른 페이지에서 "반드시「甲倍」로 限定하고 만일「甲倍」가 넘으면…"[37]이라고 한 것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甲」또는「甲倍」로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甲」이란「六甲」과 같은 말로 쓰여 전부 한번 마친 상태를 말하였으니「甲年」이란「還甲」의 뜻으로 자기가 태어난 干支가 다시 되돌아 오는 해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利息도 1割부터 계산하여 10割까지 되어 元金과 같이되는 것을 甲利라고 했을 것이다. 李家源·張三植 編著『詳解漢字大典』에는「甲

人…(中略)… 出倍利充納之役 下往本邑 又徵倍之倍於當時窮殘之民 雖只納本邑 猶不支堪 況責徵倍之倍 其爲呼寃 何可勝言…."

35) 壬戌錄所收,『鍾山集抄』, 別單, 234面
"其一邸債之 雖有未拔根者 其所徵給 必以甲倍爲限 如遇甲更勿擧論 民間邸債 毋論年條久近 勿爲督捧事也 頃因前北伯所奏 旣已行會該道臣 而甲利亦厚利也 過此則爲咸乎爲晋州事矣 一體嚴飭 於各道 明立科條 俾無踰越."

36) 朝鮮總督府中樞院,『校註 大典會通』, 戶曹, 徵債條, 275面.

37) 壬戌錄所收,『鍾山集抄』別單, 231~2面.
"…其所徵給 必以甲倍爲限 如遇甲倍 則更勿擧論足白遣…."

利」를 「甲邊」과 같은 것으로 「곱쳐서 받는 邊利」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倍息과 같은 것이 된다.

문제는 이 「甲利」나 「倍息」이 한달에 10割이었는가 아니면 1년에 10割이었는가 하는 점인데, 필경 1년에 10割이 甲倍이며 이때는 이미 元金과 같은 액이 되므로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⑩ 無息, 無邊錢, 平貸無邊利錢

이 세가지는 모두 無利子란 말로서 주로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것들이다. 영조 37년 불이 난 市廛을 돕기 위해 無息으로 3년 居置 7년 分割償還하도록 하였으며,[38] 水原에다 市廛을 세우기 위하여 均役廳에서 無邊錢을 빌려다 十一邊放債하여 자본을 만들었고[39], 국가가 베짜기에 능한 여자들을 뽑아 가르치는 한편 상을 주어 격려하거나 織具를 도와주기 위해 無邊利로 錢貨를 平貸하였다는 기록으로[40] 국가가 民生을 위한 장려금을 무이자로 貸出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⑪ 利上加利

「利上加利」란 「利中生利」나 「利中之利」와 같은 용어로서 利子의 複利計算을 말한다. 『壬戌錄』 別單을 보면,

> "本州의 京邸吏인 李昌植·白命圭·梁在洙 등은 還穀으로 捧債의 捷經을 삼고 簿船으로 殖利의 妙方을 삼는데 京債가 千兩·萬兩이라고 한 것은 「利上加利」한 것이지 그 本錢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 하여 利子의 複利計算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⑫ 重邊, 厚利

⑨項의 甲利를 논할때 인용문에서 나왔던 「厚利」라는 用語는 일반적인 利子率에 비해 高利를 말하는 것이다. 「厚利」란 「厚」자와 「重」자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重利」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文獻에 나타난 것을 보면 「重利」라 하지 않고 「重邊」이라고 하였다. 『壬戌錄』에 보면

> "漕船의 沙工輩들은 浮浪하지 않는 자가 없어 看作을 寄貨로 重邊給債하여 稅米를 裝發할 때 소위 什物·價米·糧米등의 名色으로 전부를 탈취합니다…(中略)…또 沙工에게 重邊給債하고 나중에는 移貿로써 劃取한 후 沙工들의 이름을 逋案에 기록하니……"[41]

---

38) 徐吉洙, 「開港後 利子附資本에 관한 史的考察」(Ⅰ), 17~8面, 「特權市民에 대한 官銀貸與」 참조.
39) 上揭論文, 236面, 「(6) 水原府의 什一邊取息」 참조.
40) 上揭論文, 237面, 「(7) 業本補助를 위한 平貸無邊利錢」 참조.
41) 『壬戌錄』, 別單, 55面.

라고 하여 「重邊給債」라는 용어가 두번 나온다. 일반적으로 利子를 論하는 데는 「高利貸」나 「高利貸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高利貸」라는 말은 朝鮮末期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思料되며, 「高利貸」에 해당하는 용어는 「厚利」나 「重邊」이었고 「高利貸付」는 「重邊給債」였다고 할 수 있겠다.

V. 貨幣經濟의 發達과 貸借關係 및 利子

朝鮮 前期에는 주로 實物貨幣에 의해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後期에는 銅錢의 鑄造·流通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交換經濟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왔다.

銅錢의 유통은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이와 같은 국가의 시책과 사회경제적 요청에 따라 肅宗 20년대에 가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화폐유통이 확산되었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여년 동안 매년 끊임없이 鑄造되었고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 각 監營·兵營에서도 많은 양의 銅錢이 주조되었기 때문이다.

正祖年間 약 20여년 동안 推定이 가능한 銅錢의 주조량만 보더라도 거의 백만 여냥이 되었으며(〈表 4〉 참조) 그 이외에도 私鑄가 성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는 상당한 양의 화폐가 유통되었으며 18세기부터는 集約的인 貨幣經濟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貨幣經濟의 발달에 따른 利子의 변화는 子母停息令을 분석하여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表 1〉 참조). 1708년(숙종 34년)에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貨幣貸付에 대한 利子率을 특별히 제정하여 發布하였는데 이것은 實物이 아닌 貨幣貸付가 盛行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뒤 40년이 지난 1746년(英祖 22년)에 實物貸付나 貨幣貸付를 가리지 않고 모두 年 2割의 이자율로 동일한 것을 보면, 18세기 중엽에 가서는 貨幣貸付가 완전히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英祖의 在任期間 동안만 해도 同王 3년에 50만, 13년에 50만을 주조한 것으로 보아 영조 22년에는 이자율을 貨幣貸付 利子率로 平均化시킬만큼 貨幣經濟의 實物經濟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貨幣經濟의 深化는 貸借關係에도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선 숙종 21년(1690) 右議政 崔錫鼎의 劄에 나타난 상황을 보기로 한다.

"近年에 백성을 해치는 것은 錢弊입니다. 우리나라는 數百年동안 錢貨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시골 사람들은 모두 米·布로써 貨幣를 삼아 春窮期에 다른

"漕船沙工輩 無非浮浪之類 而看作寄貨 重邊給債 及其稅米裝發之際 所謂 什物價米糧米等名色沒數奪取…(中略)…又爲重邊給債於沙工 未乃以移貿劃取後 懸錄沙工之名於浦安…."

〈表 3〉 朝鮮後期 銅錢鑄造年表

王 年	年 代	中央官廳	軍 營	地方官廳	鑄 錢 量(兩)	典 據
肅宗 4년	1678			平安 全羅 監·兵營		(萬)
4~5년	1678-79	七 司			260,000~400,000	(承) 5월 9일 (宋) 128面
7년	1681		御 營 廳			(崔) 98面
8년	1682		摠 戎 廳	黃 海 道		(承) 7月 23日
8년	1682			全羅監營		(朝) 11월 癸酉
9년	1683	戶 曹				(萬)
10년	1684			全羅監營		(承) 2월 13일 (備) 2월 14일
11년	1685	工 曹	軍 器 寺	平 安 道 安 州		(萬)(備) 2월 6일 同 12日 (朝) 2월 戊寅
12년	1686			平安監營		(朝) 2월 戊寅
			摠 戎 廳			(承) 5월 18일
				開 城 府		(承) 11월 21일
		常平廳				(承) 11월 23일
14년	1688			平安監營		(朝) 3월 丙戌
16년	1690	宣惠廳				(宋) 134面
17년	1691			開 城 府		(朝) 8월 庚子 (承) 8월 23일 (備) 10월 4일
18년	1692		摠戎廳· 訓鍊都監			(備) 8월 23일
		常平廳	御 營 廳		10,000(摠戎廳)	(備) 8월 23일
19년	1693	常平廳	摠戎廳· 訓鍊都監			(萬)
20년	1694		御 營 廳			(朝) 9월 戊寅 (承) 9월 13일
				江 原 道		(備) 9월 3일
21년	1695	賑恤廳		關 西 · 湖 南 · 嶺 南 ·	湖西·海西·關東· 嶺東·京畿 (各 1 萬) : 50,000(賑恤 廳鑄給)	(萬)(備) 11월 21 일
			御 營 廳			(朝) 12월 戊戌
					40~50萬	(備) 10월 2일 및 11월 21일
21~23년	1695-97	常平廳			60여만	(宋) 141面
景宗 4년	1724	戶 曹				(萬)
英祖 3년	1727			平 安 · 慶 尙 · 全 羅 監營· 開 城 府	平安·統營(各 15 萬), 慶尙監營(10 萬), 全羅監營(7 萬), 開城府(3萬) 合 500,000	(萬)
7년	1731	戶曹· 賑恤廳				(元)
26년	1750	戶曹· 賑恤廳				(備) 5월 24일

(表 3 계속)

王 年	年 代	中央官廳	軍 營	地方官廳	鑄 錢 量(兩)	典 據
		戶曹·宣惠廳	三軍門			(萬)
27년	1751		禁衛營·御營廳·訓鍊都監			(元)
28년	1752			統 營		(元)
			禁衙營·御營廳訓鍊都監		禁衙營(20萬3千), 御營廳(24萬), 訓鍊都監(16萬 4千) 合 607,000	(備) 28년 5월 29일
33년	1757		摠戎廳			(元)
38년	1762	戶 曹				(元)
41년	1765		禁 衛 營		약 330,000(利潤: 103,000)	(備) 5월 10일(元)
48년	1772	戶 曹				(元)
50년	1774		御 營 廳			(元)
51년	1775		御 營 廳		640,000	秋官志 3, 考律部 錢貨
正祖 9~12년	1785-88	戶 曹			600,000	(備) 12년 8월 18일
15년	1791	戶 曹				(元)
17년	1793	戶 曹			每年 5~60,000	(元)
19년	1795	戶 曹				(元)
22년	1798	戶 曹			20~240,000	(元)
純祖 6년	1806				300,000	(元)
7년	1807	均役廳			300,000	(崔)
13년	1813			咸 鏡 道	65,000	(日) 10월 20일
14년	1814	宣惠廳			326,000	(承) 12월 6일
16년	1816			開 城		(承) 4월 21일
23~25년	1823-25		禁 衛 營		367,000	(日) 7월 4일 및 8일 15월
28년	1828	宣惠廳	訓鍊都監			(日) 10월 5일
30년	1830				733,600	(元)
31년	1831			京 畿 道		(日) 3월 25일
32년	1832	戶 曹	訓鍊都監		781,300	(承) 道光 11년 1월 10일
憲宗 2년	1836	戶曹·宣惠廳		廣 州		(備) 7월 20일, 己亥年 9월 30일
3년	1837	戶 曹			銅 20萬근	(備) 庚子 9월 10일 (朝) 6월 9일 丁酉
哲宗 3~6년	1852-55	戶 曹			1,571,000	(朝) 3년 6월 乙丑 (日) 乙卯12월24일
8년	1857	戶 曹	訓鍊都監		911,000	(日) 12월 10일
13년	1862			咸興監營		(朝) 8월 丁丑
高宗 3~4년	1866-67	戶 曹 (專 管)	禁 衛 營		16,000,000 (當百錢)	(日) 10월 3일 (承) 11월 6일

(表 3 계속)

王 年	年 代	中央官廳	軍 營	地方官廳	鑄 錢 量(兩)	典 據
4~11년	1867-74				(淸錢輸入) 3,400萬兩	(日) 11. 1월 13일
鑄錢回數·量		25回	17回	15回		

備考：(萬)=『萬機要覽』, 財用編 3, 錢貨. (朝)=『朝鮮王朝實錄』.
(備)=『備邊司謄錄』. (日)=『日省錄』.
(承)=『承政院日記』. (崔)=崔虎鎭, 『韓國貨幣小史』.
(元)=元裕漢, 『朝鮮後期貨幣史研究』, 102面表, 108面表(純祖이후).
(宋)=宋贊植, 『李朝의 貨幣』.

〈表 4〉 朝鮮後期 銅錢鑄造量 단위：兩

王 年	銅 錢 鑄 造 量	王 年	銅 錢 鑄 造 量
肅 宗 年 間	870,000~1,070,000	哲 宗 年 間	2,482,000
英 祖 年 間	2,640,000	高宗年間(13년까지)	(當百錢) 16,000,000
正 祖 年 間	800,000~900,000	合 計(常平通寶)	9,587,900~9,787,900
純 祖 年 間	2,875,900	合 計(當 百 錢)	16,000,000

註) 〈表 1〉에 의해서 작성함. 鑄造量은 推定한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많을 것이므로 앞으로 계속 보충해야 될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米穀을 빌렸다가 가을에 갚는데 每 10斗에 利子를 합하여 15斗씩을 주었으니 이것이 소위 長利입니다. 貸出할 때 錢으로만 할 경우, 가령 봄에 1냥의 돈을 빌려주는데 봄의 市價로는 米 2斗에 해당합니다. 가을에는 돈 1兩 50文이 되는데 米穀으로 계산하여 받기 때문에(1兩의) 가을 市價 5斗에다 利息을 합치면 7斗 5升이 되니 그 元本을 따져볼 때 3배가 넘습니다. 더구나 豊年때에는 몇 배가 될지 모릅니다. 심한 者는 봄에 1냥을 빌려주고, 月 10文(月 1割)씩을 기르면 가을에는 1兩 6,70文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債主가 자꾸 미루고 즉시 貸出해 주지 않으면 급히 連命하기 위해서는 1兩을 倍息으로 빌리고 나면 가을에는 2兩의 값이 쌀 10斗 혹은 15,6斗가 되어 빈천한 백성이 1년 내내 힘들여 일하고 그 땅에서 난 所出로써 公私債를 갚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되겠읍니까? 무릇 銀錢을 子貸하는 것은 10분의 2를 定式으로 하여 償還하는 것이 古今에 통행하는 例規이며, 米穀으로 貸償하는 것은 10분의 5가 通規이니, 이제 이것을 적당히 참작하여 錢貨出貸之規를 10분의 2로 정하여 봄에 1냥을 빌려주면 가을에 1兩 20文을 받도록 永規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번 行錢한후 富者益富하고 貧者益貧하여 行錢한지 20년도 안되어 그 폐가 날

로 심하니 外方의 백성들은 모두 行錢의 革罷를 바라나 公私의 行錢은 이미 오래되어 革罷는 곤란한 형세이니 다만 禁法을 세워 貸錢取息의 偏規를 고치면 貧賤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幸이 있을 것입니다."[42]

이상 崔錫鼎의 割에서 보면 米價가 가을 수확기에는 1냥에 5斗이던 것이 봄의 春窮期에는 1냥 가지면 2斗밖에 살 수 없어 2.5배나 暴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풍년이 되어 秋穀價가 下落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합치면 봄에 1냥 값인 2斗를 빌렸다가 가을에 7斗 5升를 갚으니 3.75배를 갚아야 하는데 穀物貸借인 長利의 1.5배에 비해 엄청난 厚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行錢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崔錫鼎이 내세운 방안은 錢貨의 利子率은 따로 2割로 法制化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崔錫鼎의 「錢貨出貸之規」는 숙종 21년 당시 반영되지 않았고 12년 후인 숙종 34년(1708)에야 發布되었다는 것은 이미 〈表 1〉 4項에서 본 바와 같다.

行錢에서 생기는 債錢의 폐단이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비록 이자율이 2割로 낮아졌다고 해도 崔錫鼎이 말했듯이 문제는 봄과 가을의 米價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0년 후인 숙종 43년(1717)에는 "봄에 곡식을 빌려줄 때 돈으로 계산하여 주고 가을에는 곡식으로 계산하여 받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이다(II. 各種 利息制限令 7項 및 〈表 1〉 참조). 이 法令은 英祖 3년(1727)에 다시 한번 더 發布하여 강조하였으며, 『新補受敎輯錄』, 『典錄通考』, 『續大典』, 『大典通編』에 모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계속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禁令으로 行錢에 따라 생기는 폐단을 除去하여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丁若鏞이 "肅宗朝 이래로 錢貨가 大行하게 되어 私債의 폐단은 나날이 증가하였으니 小民의 敗殘은 모두 私債에서 비롯되었다."[43]고 할 만큼 私債는 증가하고 法令은 효력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예로써 上記와 같은 制限令을 발표하고 난 1년 뒤인 肅宗 44년(1718) 柳復明의 時幣 20條 가운데 제 4 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4 항 鑄錢의 폐단을 論하면, 貨幣가 流通되기 시작한 후부터 風俗이 나날이 惡化되고 物價가 날로 뛰어 심지어는 채소 파는 老婆나 소금 만드는 하찮은 人間에 이르기까지 모두(交換에 있어) 穀物을 버리고 錢을 찾으니 農民들은 穀食은 있으나 交易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곡식을 싼 가격으

42) 『增補文獻備考』, 卷 159, 財用考 6, 錢貨 : 『度支志』, 外篇, 卷 8, 版籍司, 財用部, 錢貨.
43) 『牧民心書』, 卷 30, 聽訟.
"…自肅宗朝以來 錢貨大行 私債之弊 日加月增 小民敗殘皆由私債…."

로 팔아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布 1匹을 사고자 하면 數石의 곡식을 팔아야 하니 錢을 갖고 있지 않는 農民들은 어찌 重困에 시달리지 않겠읍니까? 富家는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貧民에게 貸付하는데, 春窮期에 100錢의 빚을 내면 겨우 쌀 1斗를 얻을 수 있는데 가을에는 數斗의 쌀을 팔아야만 겨우 100錢의 負債를 갚을 수 있읍니다. 또한 甲利로 말할 것 같으면 一斗를 빌리면 6,7斗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穀食으로 빌리고 穀食으로 갚도록 한다면 利息은 一倍에 不過하니 中外의 백성들이 모두 罷할 것을 원합니다."[44]

여기서는 貨幣經濟의 보급화정책에 따른 流通量의 不足에서 오는 貨幣量의 偏在, 農民의 窮乏化過程이 敍述되어 있다. 즉 貨幣의 强制通用下에 貨幣不足이란 충격으로 말미암아 私債는 增加하게 되고 이는 農村分解를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

貨幣經濟가 農民層을 流離시키는 데는 利息制限令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盛行하였던 重邊給債의 영향이 컸다. 즉 信用制度가 발달되지 못한 당시 농민들로서는 화폐재산의 획득이 대단히 어려워지며, 만성적으로 貨幣가 부족하게 되지만 貨幣經濟가 深化되면서 화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零細 農民層은 秋收후에 高率의 利子와 함께 公私債를 갚고 나면 生計가 난감하여 土地를 상실하고 小作人化 또는 流離하게 되므로 자연 重邊給債는 農民層流離의 過程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VI. 結　　言

1. 朝鮮後期 公債에 있어서의 法定利子率은 거의가 年 1割(10%)이었으며, 英祖 22년(1746)에 한번 年 2割(20%)이었는데 이것은 公私債의 區分없이 利子率을 統合하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私債의 法定利子率은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 肅宗 36년까지……朝鮮前期와 같다.

(ii) 肅宗 36～42년……錢의 貸借에 대한 利子率-年 2割(20%)—추가 발표.

---

44) 『肅宗實錄』, 卷 62, 肅宗 44년 閏 8월 戊申條.
"其四 論鑄錢之弊則曰 自夫錢貨之行 風俗日渝 物價日湧 甚至菜傴鹽堅 赤皆棄穀而索錢 農民有穀 交易莫通 故不得已 穀價以售錢路 欲換一疋之布 已費數石之穀 無錢農民安得不重困乎 富家積錢如山 而假貸貧民 窮春出百錢之債 纔得斗米之粮 至秋用數斗之米僅償百錢之債 並其甲利而論之 則所貸一斗 所償至於六七斗 若令貸之以穀償之以穀 則息不過一倍而已 中外民庶 皆願其罷 今雖銷已鑄錢 何可無瑞加鑄 以益其無窮之弊乎."

(iii) 肅宗 42년~英祖 22년……銀·錢·布는 年 2割(20%), 穀物은 年 5割(50%).

(iv) 英祖 22년 이후……錢·穀物 모두 年 2割(20%).

(ii)項에 錢의 法定利子率을 추가 발표한 것은 肅宗 4년(1678) 銅錢이 法貨가 되어 流通領域이 확대되면서 錢에 의한 貸借가 盛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朝鮮前期에는 利息이 元本과 同額이 되면 더 이상 取息할 수 없도록 그 額數를 가지고 取息限度를 制限하였으나 朝鮮後期에는 주로 年限을 가지고 制限하였다는 점이 特記할 만 하다.

(i) 肅宗 9년~英祖 3년……3년까지만 取息할 수 있고 3년이 넘으면 利息이 정지된다.

(ii) 英祖 3년이후……아무리 時日이 오래되어도 1년의 利息밖에 징수할 수 없다.

2. 各種 利子形態는 什一邊(什一), 一分邊利, 每朔一分, 什二之法(十二, 什二, 什二取息), 長利(什五之私債), 每朔什一之息, 倍息(倍數), 倍之倍, 甲利(甲倍), 無邊錢(無息, 平貸無邊利錢) 등이 있었으며 利子의 複利計算方法인 利上加利가 있었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고리대는 重邊 또는 厚利라고 하였으며 高利貸付는 重邊給債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숙종조 이후 전국에 확산된 화폐경제는 貸借關係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즉 流通量의 부족으로 인한 貨幣量의 偏在는 필연적으로 私債를 증가시키게 되며 利息制限令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자연히 重邊給債가 盛行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農民들은 秋收뒤에 高率의 利子로 公私債를 갚고 나면 생계가 난감하여 土地를 상실하고 小作人이 되거나 流離하게 되므로 重邊給債는 農民層流離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Creditor and on the Interest in the Last Half of the Yi Dynasty

Gil-Su So*

Summary

This paper is designed to serve as a link in the course of the history of debtor and creditor, and the interest in Korea, or pre-history of Korean Finance. In relation to the theme, three papers were already presented: namely those of ancient times, Koryo and the first half of the Yi Dynasty.

For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creditor, and the interest in Korea, I focused on four analyses: (i) change of legal rate of interest by the order of interest limitation, (ii) class of debtor, (iii) class of creditor and motive of loan, (iv) mortgage and guarantee. This paper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change in the legal rate of interest. For this I chronologically arranged the orders of interest limitation from the historical materials, analyzed them in the table in section III, observed all sorts of interest rates in section IV, and studied the effect of development of the monetary economy on debtor and creditor, and interest rates in section V.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legal rate of interest for a public loan in the last half of the Yi Dynasty was 10 percent annually; once it was 20 percent in the 22nd year of King Yongjo (1746), which was a measurement of unification in public and private loans.

The legal rate of interest for a private loan, though they were not equal,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i) Till the 36th year of King Sukjong···same as the 1st half of the Yi Dynasty.

(ii) During the 36th-42nd year of King Sukjong···rate of interest in the loan of money: 20 percent per annum.

* Department of Economics, Kook Je University.

(iii) From the 42nd year of King Sukjong to the 22nd year of King Yongjo··· silver, money, cloth: 20 percent per annum; grain: 50 percent per annum.

(iv) Since the 22nd year of King Yongjo···money, grain: 20 percent per annum.

In the first half of the Yi Dynasty it was prohibited to lend money out with interest when the cumulative interest was over the amount of the principal, but in the last half of the Dynasty the limtation was by years.

(i) From the 9th year of King Sukjong to the 3rd year of King Yongjo; one could lend money out with interest for 3 years.

(ii) Since the 3rd year of King Yongjo; one could receive interest for only one year, regardless of the term.

2. So, many sorts of interest appeared in the last half of the Yi Dynasty: Sip-il-byon(什一邊), Il-bun-byon-li(一分邊利), Mae-sak-il-bun(每朔一分), Sip-i-ji-bop(什二之法), Jang-li(長利：什五之私債), Bae-sik(倍息), Bae-ji-bae(倍之倍), etc. And there I-sang-ka-li(利上加利) as the compound interest method, Chung-byon(重邊), or Hu-li(厚利) as usury.

3. The Monetary economy, which spread all over the country after King Sukjong, created shock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creditor. Maldistribution of the total amount of money, caused by lack of currency, increased the use of private loans. Chung-byon-kup-chae(重邊給債) naturally was popular after the collapse of order in interest limitation. Accordingly, peasants were hard-pressed, after paying public and private loans with high interest, and thus became tenant farmers. And so we can see that Chung-byon-kup-chae caused upheaval and chaos among the peasantry.